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수 정 안

의안 번호	2635
----------	------

2015. 11. 26.
행정재무위원회

1. 수정이유

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2호라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.
- 안 제3조 중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.
- 안 제4조제3항 중 공동위원장 선출시 “위촉직 위원”으로 수정.
- 안 제4조제6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“1회에 한하여”로 수정.

3. 참고사항

수정안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.

안 제2조제2호라목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사회적경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”를 “사회적경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” 로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 중 “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”를 “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”로 수정하고, “부위원장은”을 “부위원장도”로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6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“한차례만”을 “1회에 한하여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‘마을기업’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<u>안전행정부장관</u> 또는 <u>서울특별시장이</u>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.</p> <p>마. (생략)</p> <p>바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행정자치부장관 -----</p> <p>-----</p> <p>마. (생략)</p> <p>바. (생략)</p>
<p>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,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<u>사회적경제 지원계획</u>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사회적경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, <u>부위원장</u>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한 차례만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위촉직 위원 중에서 -----, 부위원장은 -----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-----, 1회에 한하여 -----.</p> <p>-----</p>